

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5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0년 5월 20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황의형

1. 수정이유

- 동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제정조례안의 제명과 조문을 법령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동 제정조례안의 제명을 “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” 에서 “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” 으로 한다.
-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있어 동 제정조례안의 제21조 제1항중 “쓰레기위생처리시설” 을 “폐기물처리시설” 로 조문수정(안 제21조제1항)
- 동 제정조례안의 제21조 제1항 제1호~제3호의 “탄현면” 과 “문산읍” 을 “지역” 으로 조문수정(안 제21조제1항제1호,제2호,제3호)
- 동 제정조례안의 제21조 제1항 제3호의 “지역” 조문을 삭제(안 제21조제1항제3호)

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동 제정조례안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”을 “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”으로 수정한다

안 제21조 제1항중 “쓰레기위생처리시설”을 “폐기물처리시설”로 하고,
“탄현면”과 “문산읍”을 “지역”으로 한다.

안 제21조 제1항 제3호중 “지역”을 삭제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명 <u>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등에관 한조례안</u> 제21조(주민지원협의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시장은 <u>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</u> 주민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등을 협의하기 위하 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 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. 1. <u>쓰레기위생처리시설이</u> 소재하는 <u>탄현면</u> 시의회의원 2. <u>쓰레기위생처리시설이</u> 소재하는 <u>탄현면</u> 주민중 파주시 의회의장과 시장이 추천 한 각2인 3. <u>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</u> 경계와 인접한 문산읍에 거주하는 <u>지역주민</u>으로서 파 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 4. (생략) ②(생략)	제명 <u>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안</u> 제21조(주민지원협의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----- <u>폐기물처리시설의</u> ----- ----- ----- 1. <u>폐기물처리시설이</u> ----- <u>지역</u> ----- 2. <u>폐기물처리시설이</u> ----- <u>지역</u> ----- 3. <u>폐기물처리시설의</u> ----- <u>지역에</u> ----- (삭제)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